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22-29
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2. .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 이유

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성장지원을 도모하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(가칭)마포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근거

-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2조(지원센터의 기능)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1조(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

○ 필요성 :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 선정으로 지역사회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도모함

다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: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위치 : 마포구 매봉산로 18, 2층(마포창업복지관)
- 규모 : 87.98m²
 - 사회적경제라운지(50.46m²), 코워킹스페이스(37.52m²)

마. 민간위탁기간 : 2022. 9. 1. ~ 2025. 8. 31.(3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(2022년 예산 기준)

- 소요예산 : 179,000천원(시비 33,000천원, 구비 146,000천원)
- 산출근거 : 2022년 서울특별시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운영 지침
※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사업이 2022년 5월 종료됨에 따라, 2022년 5월 이후에는
공개모집을 통한 전액 구비 신규 위탁

구분	금액(천원)	산출내역	비고
계	179,000		
운영비	122,757	- 기본 인건비 및 보험료	구비
사업비	56,243	- 희망키움샵 사업비 등	시비 33,000천원(22.5.지원 종료) 구비 23,243천원

아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3조1항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.
-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 선정으로 지역사회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도모함

3. 참고사항

가. 추진일정

-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: 2022. 6월중
- 선정심의회 구성 및 개최 : 2022. 7월말
- 수탁기관 선정 및 통보 : 2022. 8월초
- 협약체결 : 2022. 8월중
- 위탁운영 : 2022. 9월중

※ 추진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4. 참고사항 : 관계법령

<사회적기업 육성법>

제5조의2(시·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)

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<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>

제12조(지원센터의 기능)

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협의·조정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종합적 지원
2.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
3.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
4.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
5.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, 지역 및 광역단위 네트워크 구축·운영지원
6.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
7. 사회적경제기업 모니터링 및 평가
8.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
9.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
10.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

제13조(지원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)

-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법규 또는 시장이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별도의 독립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- ⑤ 시장은 지원센터 및 부문별 지원기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⑥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<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>

제5조(구청장의 책무)

-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각종 정책수립과 사업의 집행에서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촉진하여 해당 정책과 사업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도록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.

제21조(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

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설립 상담
2. 사회적경제 조직의 교육 및 경영 컨설팅
3.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 및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지원
4.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 수행

제22조(지원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)

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하며,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수탁자를 선정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